



# 규정

##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

문서번호	TWP-A502
제정일자	1996. 06. 25.
개정일자	2018. 02. 19.
개정번호	4
페이지	1/6

### 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포상
- 제3장 징계
- 부칙
- 별첨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1996. 06. 25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	
직 책	담 당		교무학생처장	기획예산처장	교무학생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## 규정

문서번호     TWP-A502


제정일자    1996. 06. 25.

###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

개정일자    2018. 02. 19.

개정번호    4     페이지    2/6

개정이력		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09. 01. 30.	· 6차 개정
2	2012. 05. 25.	· 학사행정시스템의 전면개편으로 인한 전부개정 · 규정명 변경(「학생상벌규정」→「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」)
3	2015. 04. 27.	·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4	2018. 02. 19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</li> <li>  기획홍보처 → 기획처, 입학관리센터 → 입학처</li> <li>  학생처/취업지원처 → 학생취업처</li> <li>- 전공주임교수 → 학과장 변경</li> </ul>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2	
		제정일자	1996. 06. 25.	
	<b>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47조의2에 따라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<개정2012.5.25>

**제2조(업무)** ① 학생의 포상과 징계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를 위해서는 교수회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.<개정2012.5.25>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2012.5.25>

## 제2장 포상

**제3조(포상)**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4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1. 이 대학교와 국가·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<개정2012.5.25>
2.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교·내외에서의 선행을 통하여 이 대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<개정2012.5.25>
3. 학생활동 또는 대외적인 공로가 인정된 학생
4.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<개정2012.5.25>


**제4조(발의)** 제3조 각 호의 포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전공의 학과장 또는 교무학생처장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한다.<개정2012.5.25., 2018.02.19.>

1. 공로상 추천서 1부
2. 학과장 의견서 1부
3. 그 밖에 공로 또는 선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<개정2012.5.25>

**제4조의2(심의절차)** ① 교무학생처장은 제3조의 포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2.19.>

② 포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[전문신설 2012.5.25]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2	
		제정일자	1996. 06. 25.	
	<b>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**제4조의3(학적부기재)** ① 포상학생의 포상내용을 학적부에 기재하여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를 명기할 수 있다.

[전문신설 2012.5.25.]

② 교무학생처는 수상자명부에 포상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한다.<개정 2018.02.19.>

[전문신설 2012.5.25]

**제4조의4(포상내용의 공고)** 교무학생처장은 포상의 사유 및 내용을 공고한다.<신설 2012.5.25., 2018.02.19.>

### 제3장 징계

**제5조(징계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징계한다.<개정2012.5.25>


1.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<개정2012.5.25>
2. 교직원의 지시 또는 지도에 불순한 태도를 보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시·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<개정2012.5.25>
3. 수업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수강을 방해한 학생<개정2012.5.25>
4. 교내음주·폭행·기차재 파손 및 절도 등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<개정2012.5.25>
5. 허가 없이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단행위를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<개정2012.5.25>
6.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학생<개정2012.5.25>
7.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자<개정2012.5.25>
8. 그 밖에 학칙 및 이 대학교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<신설2012.5.25>

**제6조(발의)** 제5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전공의 학과장 또는 교무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.<개정 2012.5.25., 2018.02.19.>

1. 본인진술 및 경위서 1부<개정2012.5.25>
2. 사건 경위서 1부
3.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의견서 1부<개정2012.5.25>

**제7조(징계의 종류)** 이 대학교 학칙 제47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12.5.25>

1. 근신<개정2012.5.25>
2. 유기정학<개정2012.5.25>

	<h1 style="margin: 0;">규정</h1>	문서번호	TWP-A502	
		제정일자	1996. 06. 25.	
	<h2 style="margin: 0;">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</h2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3. 무기정학<개정2012.5.25>

4. 퇴학<개정2012.5.25>

② 근신은 1일 이상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하며, 수업 이외의 학생활동이 정지되고 특별지도를 받게 한다.<개정2012.5.25>

③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하며, 그 기간 중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, 특별지도를 받으며, 수업을 받을 수 없다.<개정2012.5.25>

④ 무기정학은 15일 이상으로 하며, 그 기간 중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, 특별지도를 받으며, 수업을 받을 수 없다.

⑤ 퇴학은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며, 재입학할 수 없다.

**제8조(징계절차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안이 상정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.

②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지도교수 또는 관계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[전문신설 2012.5.25]

**제9조(특별지도)** ①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10일마다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12.5.25>

②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 제47조 및 이 규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
**제10조(징계의 해제)** ① 근신 및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다. 다만, 총장은 징계 기간 중의 사정을 참고하여 징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개정 2012.5.25>

② 무기정학의 해제는 징계학생의 지도교수가 요청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③ 제2항에 따라 징계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지도교수는 징계학생 지도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5.25., 2018.02.19.>

④ 징계해제의 요청을 받은 교무학생처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 해제여부를 심의한다. <개정2012.5.25., 2018.02.19.>

⑤ 심의결과에 대하여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개정2012.5.25>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2	
		제정일자	1996. 06. 25.	
	<b>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제11조(통보) ① 교무학생처장은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, 학과장, 학부형, 징계대상 학생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2012.5.25., 2018.02.19.>

②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종류 및 사유를 학적부에 기재한다. 다만,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에 한한다.<개정2012.5.25>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별첨**

[별지 제1호 서식] 공로상 추천서

[별지 제2호 서식] 학과장 의견서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2	
		제정일자	1996. 06. 25.	
	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[별지 제3호 서식] 본인진술 및 경위서

[별지 제4호 서식] 사건 경위서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공로상 추천서

전공		학년, 반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공로내용 :			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 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추천교수 : _____(인) 학과장 : _____(인)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귀하			

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학과장 의견서

대상자	전공		학년, 반	
	성명		생년월일	
의견 :				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	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	
학과장 : _____(인)				
학 생 취 업 처 장 귀하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본인진술 및 경위서

전공		학년, 반	
성명		생년월일	
진술 및 경위내용 (육하원칙의거)			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
위 진술인 : _____(인)			
학 생 취 업 처 장 귀하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사 건 경 위 서		결 재	담당	팀장	부서장	총장
인적사항	전공		학년, 반			
	성명		생년월일			
	참고사항					
사고내용	사고일시		사고장소			
	내용					
사후대책						
<p>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 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작성자 : _____ (인)</p>						